

더샵 수성라크에르 일반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신청이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
중도금 대출을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중도금 대출 신청 일정

구분	내용	비고
신청일시	2021년 2월 6일(토)~2021년 2월 9일(화) 10:00~16:00	
장소	하나은행 황금동지점 - 도로명주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14 (황금동) - 지번주소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9번지 ※ 주차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4일간

■ 중도금대출 취급 지점 안내

해당 동호	은행명	취급지점	연락처
101동~108동	하나은행	황금동지점	053-766-1111
			(내선 330)차장 신원철
			(내선 322)대리 최영은

■ 유의사항

- 대출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대리인 신청이 불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공동명의 : 명의자 각각 구비서류 지참 및 방문 (1/27~1/28 부부공동명의 접수 세대 해당)
- 계약금(총 분양가의 10%)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주택관련대출(주택담보대출, 중도금대출, 이주비대출 등) 보유 여부 조화를 위해 세대원 전원(미성년자 제외)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※ 세대원 정의 : 본인 및 본인 등본상 직계존속 및 비속, 배우자, 배우자 세대분리시 배우자 등본상 직계비속 모두 해당
-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지 않거나, 본인 사정(신용, 자격 요건 등)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, 계약자가 직접 약정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여야 하며, 연체 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.
-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40% 범위 내이며, 실행 회차 선택이 가능합니다. 단, 특정회차부터 실행하는 세대는 해당 회차 실행일기준 1개월이전부터 접수가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출에 필요한 인지도 및 신용 보증 수수료(HUG)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.
-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 방식은 이자후불제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4조에 의거 시행자 “지산시영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”에서 입주개시일의 이자정산일까지 대납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은행으로 직접 납부합니다.
- ※ 시행자(조합)의 이자 대납분은 입주 시 정산합니다.
-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후 해당 회차 중도금을 계약자께서 직접 납부하시는 경우, ‘시공사’와 ‘대출금융기관’에 약정일 이전에 대출 실행 중지 요청을 해주셔야만 해당 회차 중도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.

(1) 필수 준비서류

구분	내용
1	전세대원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-> 미성년자 제외
2	분양계약서 원본, 계약금납부 입증증.
3	주민등록등본 1부. (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, 1개월 이내 발급분) 분리세대의 경우, 배우자 각각 별도로 제출
4	주민등록초본 - 전세대원필수(과거 5년이상 주소 표시, 1개월이내 발급분)
5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1개월이내 발급분
6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전체 이력 포함) 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또는 1577-1000 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팩스 수령 - 하나은행 황금동지점 FAX 053-766-2653
7	소득증빙자료 (아래 소득증빙자료 중 해당 서류 준비)

(2) 소득증빙서류 (아래 택1)

현재 직업	증빙서류 (주부인 경우 배우자 소득증빙 적용 가능)
직장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최근 2개년(2018년 ~ 2019년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. - 현재 휴직자 : 휴직 전 1년간 급여명세표 - 취업(복직) 후 1년 미만 : 취업(복직) 후 현재까지 급여명세표 <p>※ 위 서류에는 회사 명판 및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</p>
개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(2018년 ~ 2019년) 소득금액증명원 (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텍스 발급) <p>※ 2019년 하반기 이후 개업자 또는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: 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없음 사실증명원 및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)</p>
연금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수급증서 (해당 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) 연금입금통장 사본 (3개월 이상 입금내역 확인 필요)
무직자	<p>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없음 사실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택 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)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77-1000 팩스 신청 → 대출신청인의 건강보험자격이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제출 가능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(최근 3개월) (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55 팩스 신청) ③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(2019년도) → 각 카드사별 콜센터 신청)

(3) 공동명의 계약자인 경우 명의자 각각 구비서류 준비하여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.

(4) 보증료 할인 대상인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아래 (5)번 참고)

(5)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및 준비서류

※ 보증료율 : 연 0.13% (아래 각 호 서류 제출시 보증료 할인 가능하나, 중복할인 불가함)

대상	준비서류	확인사항
저소득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확인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 포함 연소득 40백만원 이하
다자녀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장애인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
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 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(예식장 계약서) 소득확인서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 포함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)
한부모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
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등록증 사본, 혼인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구
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(유족)확인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
의사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
모범납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 이내, 1개월 내 발급) -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재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중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, 우대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자.